

## 새해부터 달라지는

# 환경정책

### 1. 자연환경분야

제목 (시행시기)	종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1. 공원구역외 공원사업 시행 (2001 하반기 예정)	공원구역 또는 공 원보호구역 인내 서 공원사업 시행	공원의 진입도로와 주차시설 에 대하여는 공원구역 밖이라 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	자연공원법 제2조 (자연공원과, 500-4266)
2. 자연공원내 용도지구 세분 화 및 허용행 위기준 합리화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를 밀집 정도와 지역중심역할 수행여 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 집취락지구로 세분하고 허용 행위 차등화  -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 구의 행위기준 적용 - 밀집취락지구는 금지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 도록 완화	자연공원법 제17조 (자연공원과, 500-4266)
3. 자연공원내 사유지의 협의 매수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공원내 사유지중 공원의 보 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소유 자와 협의 매수	자연공원법 제75조 (자연공원과, 500-4266)
4. 자연공원내 토지 매수 청 구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공원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 우 토지소유자는 공원관리청 에 토지매수 청구	자연공원법 제76조 (자연공원과, 500-4266)
5. 토양환경평 가제도 실시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양도·양수시 토양오 염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 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 적으로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 (토양보전과, 500-4276)
6. 토양오염정 밀조사명령제 도 도입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시·도지사는 일정기준이상의 토양오염지역에 대하여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토양보전과, 500-4276)

7.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 과실 책임강화 (2001 하반기 예정)	토양오염으로 인 하여 피해가 발생 한 때에는 오염원 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	토양오염원인자는 피해를 배 상하고 정화책임도 부담 -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 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 등의 경우 토양오염유발시설 인 수자에게도 피해배상 등 책임 의무 부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토양보전과, 500-4276)
8. 토양관련 전 문기관의 처벌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부당행위 (오염조사결과 부정발급, 조사 기관 지정기준 위반 등)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처벌규 정 마련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4 (토양보전과, 500-4276)

### 2. 대기환경분야

제목 (시행시기)	종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1. 대기환경기준 강화 아황산가스 (ppm)	1시간평균치: 0.25 24시간평균치: 0.14 연평균치: 0.03	1시간평균치: 0.15 24시간평균치: 0.05 연평균치: 0.0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대기정책과, 500-4276)
미세먼지( $\mu\text{g}/\text{m}^3$ )	24시간평균치: 150 연평균치: 80	24시간평균치: 150 연평균치: 80	
나쁨( $\mu\text{g}/\text{m}^3$ )	15/3개월	0.5년	
2. 연료사용규제 강화 0.3%이하 중유 신규공급·사 용(2001. 7. 1.)	0.5%이하 중유사용 (서울 등 14개 지역)	서울·부산·대구 등 14개 지역 에 대하여 황합량 0.3%이하 중 유를 신규 공급·사용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99-129호, '99. 12. 3) (대기정책과, 500-4279)
0.5%이하 중유 공급 사용지역 (춘천 등 8개 지역) 추가 (2001. 7. 1.)	10%이하 중유사용 (춘천 등 8개 지역)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충주, 제 천, 당진, 목포 등 8개 지역을 0.5%이하 중유공급·사용지역 으로 추가 고시	
진해시지역 청 정연료 사용대 상시설법위 확 정(2001. 7. 1.)	업무용시설 및 발전 용시설: 05분 02분 중앙난방 또는 지역 중앙난방 공동주	업무용시설 및 발전용시설: 02분 중央난방 또는 지역 중앙난방 공동주	

… 환경정책속의 환경정보 …

대(2001. 9. 1)	난방 공동주택 : 전 용면적 25평 이상	택 : 전용면적 18평이상			사업: 감면 - 폐수재이용사업자 : 감경 ☞ 폐수재이용률에 따라 부과금액의 10%~80%를 감면	
3. 제작자 배출 허용기준 강화 (2001. 1. 1) 나목적형 승용 자동차(ച, 왜 관, 8인이하 승 합차 등)	질소산화물 : 1.02g/km 탄화수소 : 0.25g/km 일산화탄소 : 1.2g/km	질소산화물 : 0.95g/km 탄화수소 : 0.22g/km 일산화탄소 : 1.1g/km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별표20 (교통공해과, 500-4284)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제1항 (수질정책과, 500-4289)
4. 제작자 배출 가스 보증기간 연장(2001. 1. 1) 버스, 트럭 등 대형차동차	2년 또는 4만km	2년 또는 8만 km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별표21 (교통공해과, 500-428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국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농지매수 불가능, 토지매수시 지방세 부과 등 문제가 있어 토지매수 주체를 국가로 변경	
5. 운행자 배출 허용기준 강화 (2001. 1. 1) 경자동차, 가스자동차, 화물자동차	경자동차 -일산화탄소: 25% -탄화수소: 400ppm 가스사용승용자동차 -탄화수소: 400ppm 경유자동차: 3.5톤 이상 -매연: 30% 경유자동차: 3.5톤 미만 -매연: 35%	경자동차 -일산화탄소: 12% -탄화수소: 220ppm 가스사용승용자동차 -탄화수소: 220ppm 경유자동차(3.5톤 이상) -매연: 25% 경유자동차(3.5톤 미만) -매연: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25 (교통공해과, 500-4284)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외에 도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지역	
				5. 한강수계관리 <신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물이용부 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지원 (2001 상반기)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호의2 (수질정책과, 500-4289)
				6. 수도정비기본 계획 승인·변 경요청제도 도 입(2001 하반기 예정)	<신설> 환경부장관은 전국수도종합계획 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건교부장 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 음	수도법 제4조의2 제5항 (수도정책과, 500-4336)
				7. 지자체의 물 수요관리 정책 추진 의무화 (2001 하반기 예 정)	<신설> 지자체에게 물수요관리 목표 수립 등 물절약정책추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달성치 못하는 경우 각종 개발사업 제한	수도법 제4조의2 (수도정책과, 500-4336)
				8. 상수원보호구 역주민 지원대 상 확대 (2001 하반기 예 정)	상수원보호구역 안 역주민 지원대 에 거주하는 주민에 상 확대 대해서만 지원사업 기능	수도법 제6조의2 제1항 (수도정책과, 500-4336)
				9. 수도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2001 하반기 예 정)	수도사업은 지방자 치단체와 한국수자 원공사만 경영기능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수도 시설 위탁 운영기능	수도법 제8조, 제 17조, 제17조의2 (수도정책과, 500-4336)
				10. 물다량 사용 국가 또는 지자체는 신축건물에 중 수도설치 의무 하는 자에게 중수도 화 (2001 하반기 예 정)	건축면적 6만m <sup>2</sup> 이상의 숙박 업·목욕장업, 1일 폐수배출량 1,500m <sup>3</sup> 이상의 공장 등을 신축하 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운영 의 무화	수도법 제11조 (수도정책과, 500-4336)

### 3. 수질·상하수도분야

제목 (시행시기)	종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2001. 1. 1)	80원/톤	110원/톤 한강수계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 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 급받는 최종수요자서울시·인천 시 전역, 경기도지역 26개 시·군)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수질정책과, 500-4289)			
2. 배출부과금 종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 준 개선	<신설>	배출부과금 부과시 사업장규모별 부과세수를 도입하여 사업장규모 에 따라 차등부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세수 1종사업장: 18·14 2종사업장: 13 3종사업장: 12 4종사업장: 1·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수질정책과, 500-4289)			
3. 배출부과금 기본부과금 감 면 등 (2001. 1. 1)	<신설>	기본부과금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 고 폐수재이용에 대하여는 김경제 도를 도입하여 폐수재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물자원절약을 유 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수질정책과, 500-4289)			

… 환경정책속의 환경정보 …

10. 물 다량 사용 신축건물에 종 수도설치 의무화 (2001 하반기 예정)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 권장 가능	건축연면적 6만m <sup>2</sup> 이상의 숙박업·목욕장업, 1일 폐수배출량 1500m <sup>3</sup> 이상의 공장 등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화	수도법 제11조 (수도정책과, 500-4336)	대한 수질검사 항목 확대(2001 하반기 예정)			1항 별표1 (수도관리과, 500-4340)
11. 물 다량 사용 신축건물에 절 수설비설치 의무화 (2001 하반기 예정)	모든 신축건물에 절수설비설치 의무화	목욕장업, 숙박업, 골프장업의 경우 기존 건물에도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수도법 제11조의2 (수도정책과, 500-4336)	19. 건물·지하 수하수를 합은 생활이 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터 공공하수 도에 배출되는 오수 지하수를 '하수' 에 포함 (2001 하반기 예정)	하수라 합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하수로 되는 우수를 말함	건물·지하철 등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하수로 징수	하수도법 제2조 제2호 (하수도과, 500-4343)
12. 빛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빛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수도법 제11조의3 (수도정책과, 500-4336)	20. 마을하수도 규모 규정 및 설 치협의 권한 이 양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마을하수도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0톤이상 500톤미만으로 정함 마을하수도 설치시 협의회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50톤미만은 오수·분뇨법에 따라 개별 오수처리시설로 설치·관리 -500톤이상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설치	마을하수도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0톤이상 500톤미만으로 정함 마을하수도 설치시 협의회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50톤미만은 오수·분뇨법에 따라 개별 오수처리시설로 설치·관리 -500톤이상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설치	하수도법 제2조 제2호의3 및 제6조의2 (하수도과, 500-4343)
13. 지역별 수질 기준제도 도입 (2001 하반기 예정)	먹는물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질기준 적용	시·도별로 국가에서 정하는 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질기준 설정 가능	수도법 제11조 제3항 (수도정책과, 500-4336)	21. 하수처리수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정비기 자이용 의무화 (2001 하반기 예정)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정비기자이용 의무화 분기계획에 기본시설, 정비사업 실시순위 등에 관한 사항만 포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재이용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처리수 재이용을 의무화	하수도법 제5조의2 (하수도과, 500-4343)
14. 수도사업자 에 대한 수량분 석 의무화 (2001 하반기 예정)	수도사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수돗물을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수질검사 뿐만 아니라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에 대한 수량분석도 실시	수도법 제19조 제1항 (수도정책과, 500-4336)	22. 하수종말처 리시설 설치 명 령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정당한 시유없이 설치하지 아니한 시장·군수에게 환경부장관이 설치를 명 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제5조의2 (하수도과, 500-4343)
15. 간이상수도 도·소규모급 수시설 관리강 화(2001 하반기 예정)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하여 관리 책임 부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하여 관리 책임 부여	수도법 제32조, 제38조의2 (수도정책과, 500-4336)	23. 하수도용 자 재기준 설정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하수도에 사용되는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하수도법 제15조 제7항 및 제41조의2 (하수도과, 500-4343)
16. 한국 상하수 도협회 설립 (2001 하반기 예정)	수도사업자, 수도관련종사자 등으로 한 국수도협회 설립	하수도관계자까지 포함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로 확대·개편하고, 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	수도법 제39조, (수도정책과, 500-4336)	24. 하수처리장 부적정 운영에 대한 제재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자가 하수처리구역인의 하수를 처리장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유입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등 불법 운영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하수도법 제1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 (하수도과, 500-4343)
16. 한국 상하수 도협회 설립 (2001 하반기 예정)	수도사업자, 수도관련종사자 등으로 한 국수도협회 설립	하수도관계자까지 포함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로 확대·개편하고, 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	수도법 제39조, (수도정책과, 500-4336)	25. 하수도사용료 등의 상습체 납시 증가산금 부과 (2001 하반기 예정)	하수도사용료 등의 제납시 체납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산금부과	가산금에 더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 (단, 증가산금 징수기간은 60월 이내이며,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하수도법 제38조 제2항 (하수도과, 500-4343)
17. 수돗물 수질 기준 중 투도형 독기준강화 (2001 하반기 예정)	1.0NTU 이하 NTU: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5.0NTU 이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수도관리과, 500-4340)				
18. 간이·전용 상수도 및 소규 모급수시설에 급수시설에	일반세균 등 9개 항목	불소, 망간, 알루미늄 항목 추가(12개 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수도관리과, 500-4340)				

## ... 환경정책속의 환경정보 ...

26. 방류수 수질 검사 및 기록보 존의무 (2001 하반기 예 정)	공공하수도 관리청 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질 검사 실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보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16조 제2항 (하수도과, 500-4343)
--	--	--	-----------------------------------

\* 「낙동강수계 물류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지정」, 「낙동강수계 하천구역에서의 능약 및 비료 사용 제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제도 의무화」, 「수질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폐수배출시설 관리」, 「낙동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등 주민에 대한 지원」,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낙동강수계 관리 위원회 설치」 등의 제도는 여기에 담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다이옥신 측정주기 (2001. 1 예정)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연 2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경우 현행과 같이 년 2회 이상으로 하고, 그 미만의 시설은 년 1회 이상으로 측정횟수를 정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생활폐기물과, 500-4310 산업폐기물과, 500-4313)
7. 폐행광등 회수·처리 시범 사업 실시 (2001. 7월 예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수도권 중심으로 폐행광등을 회수·처리하는 시범사업 실시 2002년까지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원재활용과, 500-4315)

## 4. 폐기물분야

제목 (시행시기)	종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1.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의 사용의무 (2001 하반기 예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의 실천사항 위반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후 과태료 부과	포장기준 및 1회용품 사용 위반자에 대해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3호 폐기물정책과, 500-4037
2.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권자 변경 (2001. 7월 예정)	폐기물을 수출입함에 있어 신업종적 품목에 고려하여야 함에 따라 신업자와 부관장관 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출입을 허가	폐기물을 수출입하가 대상품목이 축소되어 산업정책적 품목을 고려할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환경성 검토를 담당하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을 허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폐기물정책과, 500-4037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범위 확대 (2000. 1월 예정)	일반음식점의 경우 약석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에 허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포함 가능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을 포함 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생활폐기물과, 500-4310)
4.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물류방법이 정한 적법업체에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리발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을 위탁처리시 훈련 등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하고,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도 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는 기관의 발주자인 경우에도 분리 발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시 훈련 등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하고,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도 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는 기관의 발주자인 경우에도 분리 발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신설폐기물과, 500-4313
5.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강화 (2001. 1 예정)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간당 처리능력 0.2톤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로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시설을 확대 2002. 12. 31까지는 권고 기준, 2003. 1월부터 2005. 12월까지는 완화된 기준으로 시설규모에 따라 치등적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폐기물과, 500-4310 산업폐기물과, 500-4313)

## 5. 환경영향평가 등

제목 (시행시기)	종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1. 각종 영향평가의 통합실시 (2001. 1. 1)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영향평가를 개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	한나의 사업이 2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환경평가과, 500-4268)
2.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수렴범위 확대 (2001. 1. 1)	환경영향평가대상 시 주민의 의견수렴범위 확대	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특별자치지역 등인 경우에는 시민단체 등 지역주민 외의 자의 의견수렴의무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환경평가과, 500-4268)
3.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의 분리체결 (2001. 1. 1)	«신설»	적정영향평가비용을 확보하여 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대행계약을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체결 의무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환경평가과, 500-4268)
4. 해안에서 골재채취 시 환경영향평가 (2001. 1. 1)	사업자별 골재채취 면적마다 25만m <sup>2</sup> 이상이나 골재채취량이 100만t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수에 관계없이 광업법상 단위광구 안에서 골재채취면적이나 골재채취량이 50만t 이상인 경우로 하여 20t 이상이 공동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9조 (환경평가과, 500-4268)
5.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시행 (2001. 2. 4)	«신설»	제품의 연료 채취, 제조,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 등으로 계량화하여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태이어, 에너지 등에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 시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환경경제과, 500-4249)